

환경부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환경부 (대기관리과)
연 월 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악취방지법이 개정('23.03.28, 시행 '23.09.29)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의 악취 시료채취 근거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안 제11조의4)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의 이행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제출 서식과 내용을 규정(안 제11조의4제1항) 하고, 개선계획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토록 정함(안 제11조의4제2항 신설)

나.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의 통보(안 제13조의2제3항제2호)

시장·군수·구청장이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을 통지(기존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 변경 :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하도록 규정

다. 악취 기술진단 대상시설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포함(안 별표 6)

지체장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에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추가

라. 관계 공무원이 악취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별표 8)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명확화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호 단서 신설)

마.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신설

(안 별표 9)

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제1항”을 “법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영 제4조제1항”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3.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자진하여 제출하려는 자: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악취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3항제1호 중 “이하 제13조의3”을 “이하 이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및 비고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23년 9월 29일부터 추가로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법 제16조2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3.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해당 고시의 시행일 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별표 7 비고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별표 8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료를 채취할 때는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이 채취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검사기관에 측정·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9 제2호다목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	------------------	----	-------------	-------------	------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9. 6. 13.>

[] 악취배출시설
[]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 호 (사 업 장 명 칭)			
	성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휴 대 전 화 번 호 :)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업 종 (주 산 품 :)			
[] 배출시설, []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예정)일				
[] 배출시설, [] 방지시설 개선 완료(예정)일				
배출시설명 및 방지시설명				
[] 배출시설, []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및 개선계획		*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개선기간 중 관리계획		예상 악취배출농도(지정악취, 복합악취)		악취저감 및 관리계획
개선완료 후 [] 배출시설, [] 방지시설 운영·관리계획				

「악취방지법」 제10조제2항,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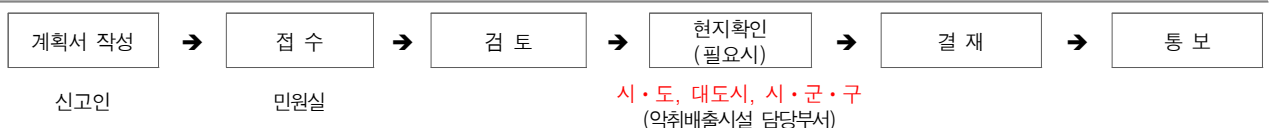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개선계획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내용을 제출서류 중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공법 등의 개선으로 악취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출서류 중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4(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에 별표 4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개선계획을 첨부하여 <u>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u>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4(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영 제4조제1항-----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받은 자: <u>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u> 제출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자: <u>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u> 제출 3.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자진하여 제출하려는 자: <u>시·도지사, 대도시의 장에게</u> 제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
<신 설>	

	<u>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악취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제13조의2(기술진단) ①·② (생략)	제13조의2(기술진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수립한 경우: <u>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13조의3부터 제13조의5까지에서 같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u>	1. ----- ----- ----- --. <u>이하 이 조</u> ----- ----- ----- --
2.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경우: <u>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u>	2. ----- ---- <u>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u>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